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3.14.(수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거복지기획과	담당자	·과장 문성요, 사무관 노지훈 ·☎ (044) 201-3352, 474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” 보도 관련
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('17.12월)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, 건보료 혜택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-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·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· 재산세 감면기한은 '18년에서 '21년까지 연장되고,
 - ② '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정상시행하되,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(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)합니다.
 - ③ '18.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이 조정(5년→8년 임대)되며,
 - ④ 건보료도 정상부과('19년 소득분부터)하되, '20년말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(8년 임대: 80%, 4년 40%)합니다.
- 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'18.3월 까지 등록한 경우 '5년 이상 임대' → '18.4월 이후 등록하는 경우 '8년 이상 임대'로 조정됩니다.
- 다만, '18.4월 이후 등록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·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임대소득세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정상부과를 앞두고 사업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,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

‘18.4월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것입니다.

- ☐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면, 주택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보다는 임대소득세 혜택 등을 받으면서 등록할 유인이 커져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,,파이낸셜뉴스-3.14일, 이데일리-3.12일 등) >

- ◆ “내달 양도세 중과 전에...” 임대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들
- 2월 한 달간 9,199명이 신규 등록하는 등 작년 동월보다 2.4배 급증
 -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시행,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준공공임대(8년)으로 등록할 경우에 세제혜택 가능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(☎ 044-201-47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